

어선검사신청에서 검사증서교부까지

(50톤 미만 어선의 경우)

한국어선협회 인천지부

행정원 임 서 혁

목 차

1. 머리말
2. 어선검사의 종류
3. 검사신청시 첨부서류
4. 검사종류별 처리절차
5. 기타 일반적인 민원
6. 맺음말

1. 머리말

어선검사는 어선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어선이 조업(항행) 중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어선의 수명도 연장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 어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선검사를 받음에 있어 자세한 처리절차를 몰라 관계기관을 여러번 왕래하는 어민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검사를 기피하는 어민도 있어 어선검사신청에서부터 검사 후 어선검사증서가 교부되기 까지를 설명하여 어업을 영위하시는 어민들의 이해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한다.

단, 50톤 이상의 어선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비교적 자세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50톤 미만의 경우로 제한하였다.

2. 어선검사의 종류

어선검사의 종류에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

시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50톤 미만의 어선으로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어선을 예로 하기 때문에 정기검사와 임시검사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하겠다.

가. 정기검사

어선이 최초로 항행에 사용되는 때, 또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행하는 정밀한 검사로서 어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검사한다.

나. 임시검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행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1) 정기검사집행 중 차기정기검사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설비가 있거나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설비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정.

(2) 정기검사시 유예된 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에 대하여 지정.

(3) 어선에 개조부위가 발생하였을 때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총톤수의 변경 또는 추진기관을 대체하거나 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

(4)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선명, 최대승선 인원의 변경 등)

(5) 임시항행 신고사

(6) 기타 어선의 소유자가 필요하여 신청이 있을 시.

3. 검사신청시 첨부서류

제반 검사신청시에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 외에

신청하는 검사의 종류별로 각각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간혹, 신조선의 총톤수측정 및 제1회 정기검사신청시에 조선증명서와 기판매도증명서, 기관거치증명서를, 기판대체에 따른 임시검사신청시에 기판매도증명서와 기관거치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일찍이 첨부서류의 간소화절차의 일환으로 제출이 생략되었으므로 검사를 위해서라면 구태여 작성하거나 조선자 또는 매도자로부터 등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가. 정기, 임시검사

- 1) 국적(선적)증서(제시)
- 2) 검사관계서류(검사증서, 검사수첩, 검사기록부)

나. 개조에 따른 임시검사

- 1) 개조발주허가서(제시)
- 2) 개조신고서(5톤 이상의 어선으로 주요 촌법이 변경될 경우로써 주요촌법 10% 이상 또는 총톤수 20% 이상 변경될 시에 한함: 제시)
- 3) 국적(선적)증서(제시)
- 4) 검사관계서류(검사증서, 검사수첩, 검사기록부)

다. 총톤수측정 및 제1회 정기검사(신조선)

- 1) 전조발주허가서(제시)
- 2) 전조신고서(총톤수 5톤 이상 어선에 한함: 제시)

4. 검사종류별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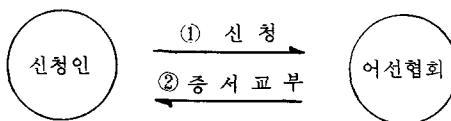
모든 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담당검사원이 지정되어 담당검사원의 현장임검결과에 따라 검사증서가 교부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이나 검사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세분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가. 정기, 임시검사

- 1) 검사신청(표 1)
- 2) 현장임검

3) 검사증서 교부

표 1. 처리흐름도



나. 개조에 따른 임시검사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가 변경되거나 추진기관을 대체하거나 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이 변경됨에 따른 임시검사시에는 현장임검 외에도 변경등록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검사가 종결되므로 임검 및 총톤수측정이 끝나게 되면 시·군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국적(선적)증서를 교부받아 제시하거나 시·군으로부터의 변경등록통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기판의 출력만 변경된 경우(예: 디젤30마력에서 디젤45마력으로의 변경 등)에는 변경등록사항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고 평상시의 검사절차와 같으나 동일출력으로 바뀔 경우 외에는 사전에 개조발주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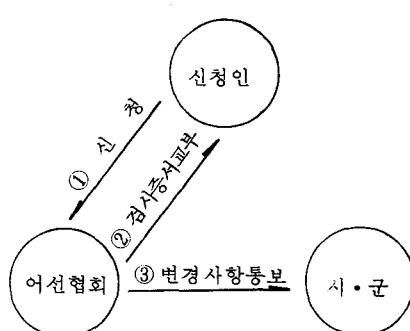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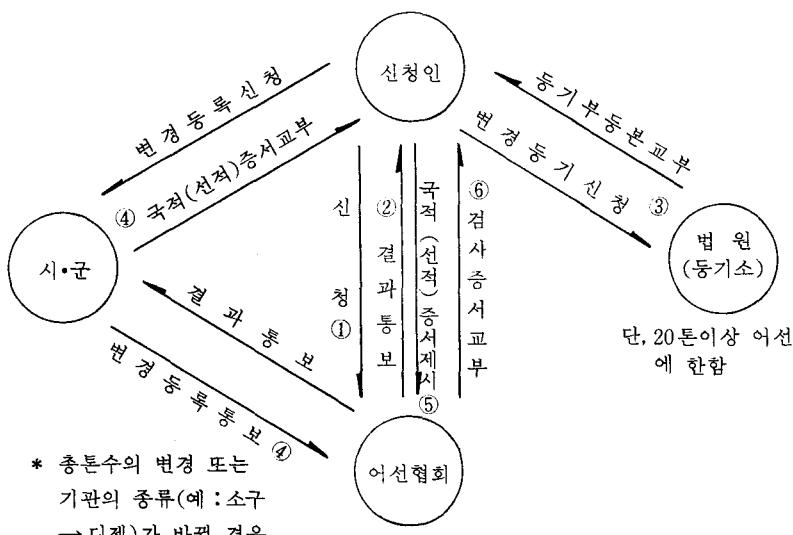
또,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등부선이므로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먼저 변경등기(법원) 후, 변경등록(시·군) 하여야 하니 총톤수 20톤 미만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으로 변경될 때에는 특히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표 2)

다. 제1회정기검사 및 총톤수측정(신조선)

어선을 건조하였을 때 실제로는 총톤수측정, 어선등록, 제1회정기검사 순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절차를 간소화하여 총톤수측정과 제1회 정기검사를 동시에 집행하고 있다.

또한, 검사증서의 교부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어선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국적, 선적증서 또는 어선원부등본) 제시에 따라 검사를 종결, 어선검사증서를 교부하던 것을 역시 개선하여 총톤수측정 결과통보시에 검사증서도 시·군에 이송하여 국적(선적)증서와 검사증서를 동시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표 3)

표 2. 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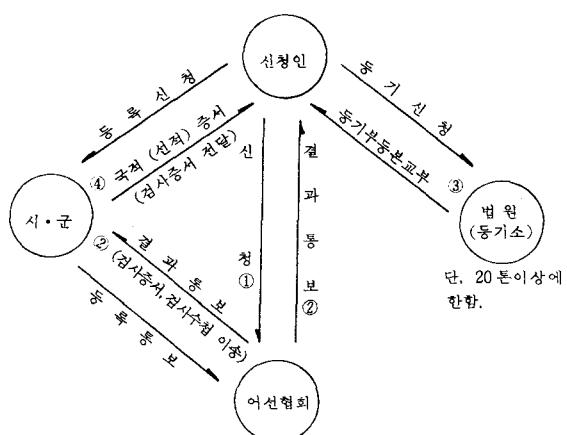


* 단순히 기관의 출력이 바뀔 경우 : 예 디젤 20마력→ 디젤 20마력

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 때에는 어선건조발주허가를 첨부하여 무선 국가허가를 먼저 득하고 무선전화를 설치, 무선검사(준공검사)를 필한 후에야 어선검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무선국허가는 국적(선적)증서 또는 검사증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무선종사자를 선임하여야 처분된다(전파감리국의 업무 절차에 의함)

표 3. 처리흐름도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제 1회 정기검사 및 총톤수측정 신청
- 현장입검 및 총톤수측정
- 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 및 어선검사관계서 류이송(신청인에게는 총톤수측정증명서와 검사기록부를 송부하고 시·군으로는 검사증서 및 검사수첩을 이송)
- 어선등기 (20톤이상에 한함)
- 어선등록 (국적·선적증서와 같이 검사증서교부)

그러나 5톤 이상의 어선은 무선전화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상기 절차 외에 무선국허가에 따

5. 기타 일반적인 민원

어선검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민원의 종류는 많으나 비교적 이해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신청”과 “계선계”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하겠다.

가.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연장신청은 사실상 정기검사기일 연장신청으로써 성어기일 때, 조업 중일 때에,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인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5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해주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조선소에 상가를 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거나 상가시설이 부족할 때에도 연장이 가능하며 상기의 경우에는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나. 계선계(繫船屆)

어선수리,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어선을 조업(항행)에 사용하지 않고 계선시켜 두었을 때 제출한다.

계선계를 제출하면 미수검어선의 경우 계선기간중 미수검어선명단에서 제외되므로 미수검어선은 반드시 제출하여 미수검어선을 장기간 방치하는데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6. 맷 음 말

이상과 같이 어선검사종류별로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실무자가 자세히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가급적 쉬운 말을 골라서 하고 전문적인 용어는 그림 등과 함께 풀어서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거나와 나름대로 자세히 안내하려고 하면 미안해서인지 대충 알았다고 하며 문을 나서버리는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신청인은 성실한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안내를 받은 후 문을 나서는 것이 바람직 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어선검사를 절대 어민여러분들에 대한 규제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당 지부에서 개최한 바 있는 어민파의 좌담회 자리에서도 논의되었던 일이 있지만 어선검사는 어민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정부측면에서의 기술지원이자 혜택이며 봉사의 한 수단임을 깊이 인식하여 검사기일이 도래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 풍토가 하루속히 조성되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 사 준 비

- 선 체 : 상가 또는 거선
- 기관, 전기설비 : 개방검사, 절연저항 시험준비
- 조타, 계선, 양묘설비 : 닻, 케이블 및 계선용 삭 나일
- 구명, 소방, 기타설비 : 적당한 장소에 진열
- 법정비품 : 적당한 장소에 진열

